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 6090

제 370 호

1973. 5. 10

# 시보

차 례

이 일부분은 7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73. 5. 10  
 서울특별시, 시민의장

◎ 규 칙			
제 1302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직제중개정규칙	.....	3
◎ 고 시			
제 29 호	배합사료성분 등록고시	.....	4
제 71 호	사료성분 등록고시	.....	5
제 72 호	"	.....	6
제 73 호	" 갱신고시	.....	6
✓ 제 74 호	계류중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설 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	8
◎ 공 고			
제 90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자 및 주소변경 공고	.....	10
제 92 호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변경 및 대체 지정공고	.....	10
◎ 사 령			1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직제중개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양택식

197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02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의 2 를 삭제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지방임업기좌" 를 "지  
방농림기좌" 로 한다.

제 4 조중 "사무분장" 을 "남산 및 북  
악공원 관리사무소" 로 하고 "지방임업  
기사" 를 "지방농림기사" 로 한다.

제 4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의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 ①  
사무소에 서무계, 운영계 및 시설관  
리계를 두고, 서무계장과 운영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관리계장은 지방  
농림기사로 보한다.

② 사무소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 무 계

가. 문서, 관인 및 기밀

나. 인사, 예산, 회계 및 용도

다. 물품, 장비의 관리

라. 매표, 수표

마. 공원내 출입의 통제와 경비

바. 공원내 청소미화

사.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 영 계

가. 공원운영의 종합계획

나. 공원내시설의 운영 및 운영의  
지도통제

다. 공원내 질서의 유지

라. 공원이용자에 대한 안내, 공보와  
편의제공

마. 공원내 출입자의보호, 간호 및  
미아의 수용보호

3. 시 설, 관 리 계

가. 공원개발의 종합계획

나. 공원시설의 설계, 시공감독과 유  
지보수

다. 수목및 동물의유지관리, 보호

라. 기계, 전기설비의시설, 유지보수

마. 동물원, 식물원, 꽃묘포장, 동물  
방사원의 관리

제 5 조중 "관리계장" 을 "주무계장" 으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5월 5일부터 시행  
한다.

고 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고시 한다.

◎ 서울특별시 사료성분 등록고시 제 29 호

사 료 성 분 등 록 고 시

등 록 번 호	공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대 원 사료상사	풍납동 355-1	강익현	배합사료	농 축 배합사료	농 축 배합사료

등 록 번 호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이상 16.0	%이상 2.0	%이하 4.5	%이하 13.0	1973.5 1975.5	

배합비율 : 옥수수 60 %      패 분 1 %  
 대두박 10 %      동물성박류 4 %  
 임 박 10 %      소 맥 채 10 %  
 소 맥 피 5 %      계 100 %

◎서울특별시고시 제 71 호  
 사료성분등록고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 제 1 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73. 5. 4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 등록사항

등록번호	공 장 명	소재지	대 료 사			
			성 명	종 류	명 칭	용 도
3~88	중앙축산사료 주식회사	동대문구 상봉동320	유창열	배합사료	부로일러 후기 배합사료	부화후대략4주이상 육성용새미
3~89	"	"	"	"	"	" 완성용새미
3~90	"	"	"	"	농 축 배합사료	양 동 용 농 축 사료
3~91	"	"	"	"	"	축 우 용 "

등록 번호	사 료 성 최 소 량		분 량 최 대 량		유효기간 부터 까지	비 고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3~88	이상 16.0 %	이상 2.5 %	이하 6.0 %	이하 10.0 %	73.5 75.5	신규등록
3~89	16.0 %	2.5 %	6.0 %	10.0 %	"	"
3~90	16.0 %	2.0 %	4.5 %	13.0 %	"	"
3~91	16.0 %	2.0 %	4.5 %	13.0 %	"	"

※ 농축배합사료원료별 배합비율 옥수수 60 % 박류 30 % 폐분 10%

◎서울특별시고시제 72 호

한다.

사료성분등록고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1973. 5. 4.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등록사항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 성명	사 료		
				종류	명칭	용도
3~87	영육농장 사료공장	동대문구신내 동 528	김영회	배합사료	농축 배합사료	양계용 농축사료
등록 번호	사료성분량				유효기간 부터 까지	비고
	최소량	최대량				
3~87	조단백질 이상 16.0 %	조지방 이상 2.0 %	조섬유 이하 4.5 %	조회분 이하 13.0 %	73.5. 75.5.	신규등록

◎서울특별시고시제 73 호

한다.

사료성분등록갱신고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1973. 5. 4.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등록사항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 성명	사 료		
				종류	명칭	용도
3~45	중앙축산사 료주식회사	동대문구 상봉동 320	유창열	배합사료	부로일러후기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4 주이상 완성용하이
3~46	"	"	"	"	큰병아리	부화후대략 13 주~ 초산까지 (후기)

등 록 번 호	공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성 명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3~47	중앙축산사 료주식회사	동대문구 상봉동 320	유 창 열	배합사료	산란초기용 배 합 사료	초산후대략 20 주~ 까지부로일려종계
3~48	"	"	"	"	"	초산후대략 20주~ 까지산란용종계
3~49	"	"	"	"	산란말기용 "	초산후 대략 36 주이상
3~50	"	"	"	"	산란중기용 "	초산후 대략 21~35 주
3~51	"	"	"	"	어 분 기 초 "	기초배합 사료용
3~52	"	"	"	"	식물성기초 "	"
3~53	"	"	"	"	육골분기초 "	"
등 록 번 호	사 료 성 분 량				유효 기간 부터 까지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3~45	16.0 % 이상	2.5 % 이상	6.0 % 이하	10.0 % 이하	73.5. 75.5.	갱 신
3~46	12.0 %	2.5 %	7.5 %	10.0 %	"	"
3~47	15.0 %	2.0 %	7.0 %	13.0 %	"	"
3~48	15.0 %	2.0 %	7.0 %	13.0 %	"	"
3~49	14.0 %	2.0 %	8.0 %	13.0 %	"	"
3~50	14.0 %	2.0 %	7.0 %	13.0 %	"	"
3~51	50.0 %	5.0 %	2.5 %	20.0 %	"	"
3~52	35.0 %	3.0 %	8.0 %	7.0 %	"	"
3~53	40.0 %	8.0 %	3.0 %	33.0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74 호

계류중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제 407 호 ( 71.7.7 )  
로 시설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 27 호 ( 72.2.7 ) 로 시행허가된  
시내서대문구갈현동산 123-1 의 4 필  
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지적승  
인 변경과 동법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 73.4.4 ) 에 의하여  
이에 고시한다.

1973. 5. 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시내서대문구갈  
현동산 123-1 의  
4 필지

2. 사업의종류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명 칭 : 갈현동주택단지

시행면적 : 10,536 평

3.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 시내서대문  
구갈현동6-6  
정 연 백

4.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 1973.5.

준 공 : 1973.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  
의 권리명세 ( 생략 )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판제인의  
주소 성명 ( 생략 )

7. 변경사항

가. 가로망변경조서 ( 별첨도면참조 :  
기허 고시된 도로는 폐지하고  
다음 가로망을 신설 )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점	종점	비고
소로	3	1	6미터	201미터	1,206	구획정리지구계	소3-3	
"	"	2	"	222 "	1,293	소3-4	소3-1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면 적	기 점	총 점	비 고
소로		3	6미터	192미터	1,116	소 3 - 1	소 3 - 1	
"		4	"	240미터	1,401	"	소 3 - 7	
"		5	"	17미터	84	구획정리지구계	소 3 - 4	
"		6	"	26미터	135	"	소 3 - 4	
"		7	"	43미터	240	"	소 3 - 2	
소로	4	1	4미터	201미터	784	소 4 - 2	소 3 - 1	
"		2	"	57미터	216	구획정리지구계	소 3 - 3	
"		3	"	130미터	496	소 3 - 3	"	
"		4	"	61미터	232	구획정리지구계	소 3 - 1	
"		5	"	75미터	252미	소 3 - 4	"	

나. 아동공원 변경조서

구 분	시 설 명	면적(평)	위 치	비 고
기 정	아 동 공 원	317	시 내서대문구갈현동산123-4	
변 경	"	317	"	위치변경

다. 주차장 및 쓰레기처리장(신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주차장및쓰레기처리장	시 내서대 문구갈현동산123-1	50평	

8. 인가내용 : 별첨인가조서(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90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및주소변경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을 서울특별시  
단체 감독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3. 5. 7.

서울특별시 장

조 합 명	구 분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시멘트 가공업협동조합	변경 후	조 동 호	종로구 공평동 138-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층)	74-2194
	변경 전	상 동	중구을지로 5 가 25	23-2827
서울특별시메리야스 공업협동조합	변경 후	조 승 호	중구을지로 5 가 271-6	27-9708
	변경 전	최 무 정	상 동	상 동
서울특별시철계가구 공업협동조합	변경 후	이 재 선	중구수표동 35-6	27-1885
	변경 전	안 덕 우	상 동	상 동

◎ 서울특별시공고제 92 호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변경및대체지정공고

당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  
업체의 상호(기업체명) 대표자, 소재  
지,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  
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및 대체 지정  
공고한다.

1973. 5. 8

서울특별시 장

1.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529	삼미 염공 주식회사	김동호	성북구 하월곡동 90	염직물	529	삼미 염유 주식회사	김동호	성북구 하월곡동 90	염직물
537	해외 섬유 주식회사	최동현	성북구 하월곡동 70-4	트리코트	537	해외 섬유 주식회사	최동현	성북구 하월곡동 70-4	트리코트
807	주식회사 미성 핸드백	박순범	용산구 원효로 1가93	핸드백	633	주식회사 미성 핸드백	박순범	서대문구 성산동 141-1	핸드백
2. 대체 지정									
지정 취 소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319	휘만 산업사	박만규	동대문구 면목동 104-695	쉐타	319	휘만 산업 주식회사	박만규	동대문구 면목동 104-695	쉐타
459	기무역 상사	김화식	성동구 미천동 206	〃	459	주식회사 기회광 기무역 상사	기회광	성동구 미천동 206	〃

사 령

◎ 1973.5.3

구획정리제 2 파 지방토목기사보 남 상 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대문구보전소 조건부지방보전기사보 김 광 록

지방보전기사보에 임함

2 호봉에 급함

서대문구 보전소 근무를 명함

김 수 회

지방기계기원보 시보에 임함

자동차 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